

2021년도 2/4분기

---

# 공익제보 신고접수 현황보고

2021. 9.

감사위원회

# 1. 개요

##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7항

“신고 접수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보고 대상

- 기 간 : 2021. 4. 1. ~ 6. 30.(2021년 2분기)

- 대 상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온라인(시장 핫라인) 및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으로 공식 접수된 공익제보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 이첩된 공익제보

## □ 접수결과

- 2021년 2분기 총 172건 접수

[표 1] 2021년 2분기 창구별 접수현황

(단위 : 건)

접 수 창 구	합 계	4월	5월	6월	
공 익 제 보 지 원 센 터	공직자비리신고	103	30	27	46
	공 익 신 고	55	19	22	14
	부 정 청 탁	3	2	0	1
	퇴직공무원특혜	-	0	0	0
국민권익 위 원 회	국 민 신 문 고	11	4	5	2
합	계	172	55	54	63

## 2. 제보경로 및 발생기관 분석

### □ 제보 경로 분석

[표 2] 제보 경로별 접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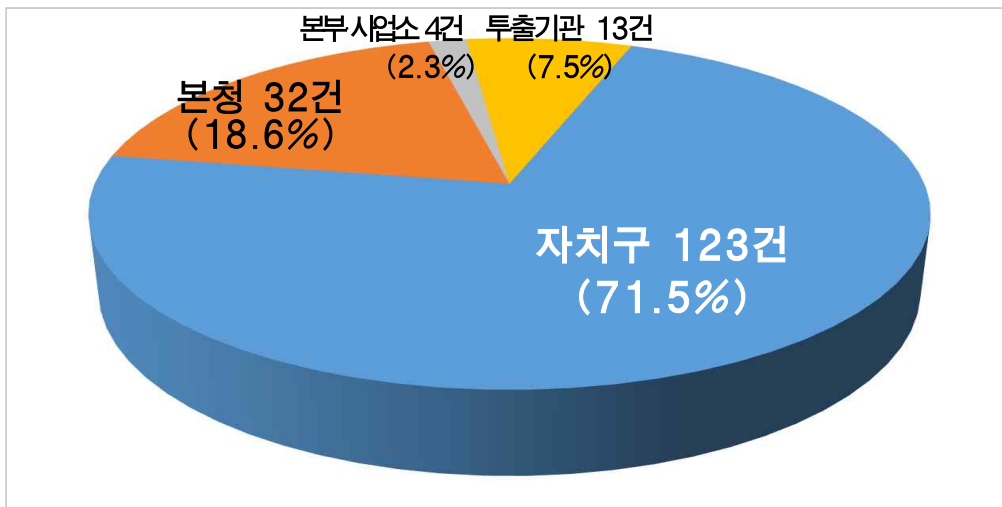
(단위 : 건)

경로	합 계	공익제보지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온 라 인 홈페이지/모바일	오프라인 우편/방문/팩스	국민신문고 시스템 연계
접수건수	172 (100%)	156 (90.6%)	5 (2.9%)	11 (6.3%)

\*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 통합 민원 창구임

### □ 접수 제보별 소관사무 분석

- 자치구 소관 사무 관련 제보가 123건(71.5%)으로 가장 많았음
  -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시민 생활상의 공익신고 41건
  - 자치구 직원 복무 및 불친절 등의 공직자비리신고 등 69건
  - 기타 민원상담 등 13건
- 본청 소관 사무 제보 32건(18.6%), 본부/사업소 소관 4건(2.3%)
  - 본청의 경우 공익신고 5건, 공직자비리신고 등 27건
  - 본부/사업소의 경우 공익신고1건, 공직자비리신고 3건
- 그 외에 시 투자출연기관 소관 제보가 13건(7.5%)
  - 시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공익신고 3건, 공직자비리신고 등 10건



### 3. 공익제보 분류

#### □ 제보내용의 분류

○ 접수된 172건 재분류 결과,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155건

[표 3] 접수 공익제보 재분류 결과

(단위 : 건)

총계	공익제보 해당 155건(90.1%)		일반민원/기타
	부패신고	공익신고	
172 (100%)	105 (61%)	50 (29%)	17 (9.8%)

\* 청원/제안/건의/항의 등 일반민원 성격 제보는 공익제보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익제보 처리에 준하여 접수 답변하고 있음

#### ※ 조례상 ‘공익제보’ 해당 신고 범위

구 분	개 요	신고 대상 행위
부패 신고	부패방지법 제2조(정의) “부패행위”신고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공익 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정의) “공익침해행위”신고	식품위생법, 의료법, 공정거래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직무수행 기본자세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등 서울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위반 행위

## 4. 공익제보 내용 분석

### □ 공익제보 해당 155건 세부내역

#### ○ 부패신고 해당 105건 세부 내용

[표 4] 재분류 결과 부패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분	소관기관	건수	내 용
부 정 청 탁	본 청	1	업무관련자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의심
	자 치 구	5	
	소 계	6	
업 무 부 적 정	본 청	17	업무 추진 과정 중 고의 또는 미숙/부주의 행위 관련 (업무 부당행위 혹은 업무소홀)
	본부·사업소	2	
	자 치 구	48	
	투자출연기관	6	
	소 계	73	
불 공 정 행 위	본 청	5	입찰이나 채용, 인사과정의 불공정행위나 정책 추진상의 특혜제공 의심
	본부·사업소	1	
	자 치 구	3	
	투자출연기관	2	
	소 계	11	
복 무	본 청	2	초과근무/출장 부정행위, 직무 태만, 불친절, 품위유지 위반 등 행동강령 관련
	본부·사업소	0	
	자 치 구	12	
	투자출연기관	1	
	소 계	15	
총 계		105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 공익신고 해당 50건 세부 내용

[표 5] 재분류 결과 공익신고 해당 내용

(단위 : 건)

구 분	건수	소관기관	조치 상황	내 용
도 시 정 비 법	9	자 치 구	개선3, 해당없음4, 권한없음1, 취하1	조합의 부당한 용역계약 체결 신고 등
주 차 장 법	5	자 치 구	개선1,진행중1, 해당없음1,중복1,취하1	빌라 주차장 내 불법 창고 설치 철거 요청 등
건 축 법	4	자 치 구	조치(시정명령)1, 해당없음2, 취하1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등
식 품 위 생 법	3	자 치 구	조치1(과태료),개선2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등
옥 외 광 고 물 법	3	자 치 구	개선2,취하1	옥외 불법 현수막 철거 등
공 동 주 택 관 리 법	1	본 청	해당없음3	아파트단지 관리규약 위반 등
	2	자 치 구		
개 인 정 보 보 호 법	1	사 업 소	조치(주의)1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1	투 자 출 연	취하1	
	1	자 치 구	개선1	
근 로 기 준 법	1	본 청	진행중(노동부)1	근로자 휴일 수당 미지급 등
	1	자 치 구	조치(시정명령,환수)1	어린이집 교사 채용계약일 허위 보고 등
감 염 병 예 방 법	1	자 치 구	개선1	방역수칙 위반 불법영업
공 유 재 산 법	1	자 치 구	해당없음1	공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요청
공 인 중 개 사 법	1	자 치 구	조치(과태료)1	공인중개사 설명·표기 등 의무 위반
공 중 위 생 관 리 법	1	자 치 구	개선1	상가 화장실 비위생물건 처리
관 광 진 흥 법	1	자 치 구	해당없음1	외국인관광 민박업 불법영업
도 시 가 스 법	1	투 자 출 연	해당없음1	연료공급사업자 부당선정
방 문 판 매 법	1	본 청	증거불충분1	비트코인이용 다단계 사기
보 행 안 전 법	1	투 자 출 연	해당없음1	지하철역 지하상가 내 발생사고 피해보상 요구
의 료 법	1	자 치 구	개선1	성형외과 유튜브 광고 신고
장 애 인 복 지 법	1	본 청	해당없음1	무연고 발달장애인 불법 퇴소 및 학대
폐 기 물 관 리 법	1	자 치 구	진행중1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하 수 도 법	1	자 치 구	개선1	음식물 처리기 불법 개조 판매 등
일 반 민 원	1	본 청	해당없음1	오솔길 우레탄 포장 반대 등
	5	자 치 구	개선1,해당없음1,중복3	
총 계	50			

\* 의심이나 추정하는 신고까지 포함하여 작성

## 5. 처리 및 조치 결과 (2021.8. 20. 현재)

### □ 처리 내역

[표 6] 접수제보 처리 현황

(단위 : 건)

총계	처분 및 개선(39)		종결(94)				진행중	취하
	처분 (조치)	개선 등	해당없음	권한없음	중복 등	중지 (감사원 감사, 수사 재관중)		
172	7	32	71	2	13	8	22	17

※ 개선 등 내역 : 구두경고, 주의촉구, 개선약속, 계도 및 그 외 행정지도 등 포함

※ 공익제보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5항

### □ 처분(조치) 내역

[표 7] 공익제보 조치 결과(요구 포함)

(단위 : 건)

연번	신고구분	신고 내용	처분기관	조치 내역
1	공 익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감사위원회	주의요구(주의)1
2	공 익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자 치 구	시정명령
3	공 익	어린이집 교사 계약체결일 허위 보고 등	자 치 구	시정명령, 환수조치
4	공 익	음식점 위생상태 불량	자 치 구	과태료
5	공 익	공인중개사법상의 대상물 설명 등 의무 위반	자 치 구	과태료
6	부 패	민간위탁기관의 인사비리 등 제보	본 청 소관부서	주의,개선
7	부 패	민원 미처리(직무유기) 및 소방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 답변요구	본 청 소관부서	과태료,원상회복 조치